

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일환으로서,
- 나.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 개요

- 사무명 :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
 - 현 위탁기관 :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 - 위탁기간 : 2019. 2. 11. ~ 2021. 12. 31. (2년 11개월)
 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

○ 사업비 : 금1,366,890천원

- 1차년도 (2019. 2. 11. ~ 2019. 12. 31.) : 320,000천원

- 2차년도 (2020. 1. 1. ~ 2020. 12. 31.) : 436,671천원

- 3차년도 (2021. 1. 1. ~ 2021. 12. 31.) : 610,219천원

· 본예산 410,219천원, 추경 200,000천원

: '21년 하반기 '스마트 헬스케어'를 통한 전시민 건강관리'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
대사증후군관리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여 스마트 밴드 및 모바일 앱에서 수집되는
개인 건강정보 데이터 축적·관리 위한 200백만원 추경예산 반영

나. 주요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 (2022. 1. 1. ~ 2024. 12. 31.)

○ 주요 위탁업무

-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자 집중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

- 국가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서비스 활성화 전략 마련

-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및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

-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자치구 모니터링, 자치구 실적 취합·분석

-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(통합 DB) 운영 및 기능 개선

- 25개구 자치구 보건소 대상 심화 전문교육과정 기획

- 대시민 인지도 확산 홍보 수행 및 홍보 시안 개발·배포

- 「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」 서비스 추진 지원

- 지원단 운영을 통한 자치구 지원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9.6.15.~2009.12.31. (7개월 :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)
- 2차 : 2010.3.1.~2010.12.31. (10개월 :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)
- 3차 : 2011.3.23.~2013.2.10. (1년 11개월 :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)
- 4차 : 2013.2.11.~2016.2.10. (3년 :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)
- 5차 : 2016.2.11.~2019.2.10. (3년 :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)
- 6차 : 2019.2.11.~2021.12.31. (2년 11개월 :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)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,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하고,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‘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’은 보건의료 관련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과업의 수행이 상시 요구됨
- 따라서,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김유정 (☎2133-7526)